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6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위기지역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추가 등(안도결의원안, 김성원의원안)	2

I. 개요

1.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4.

(3) 회 부 일 : 2025. 7.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1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위기지역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추가 등(안도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현행	개정안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30조의3)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를 한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세액공제 * 위기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공제금액: ① + ② ① 임금감소액의 10% ② 임금보전액의 15% * 임금보전액: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 위기지역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추가(안도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를 한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세액공제 * 위기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위기지역 공제율 상향 ○ 유형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75¹⁾</td><td>10</td><td rowspan="3">10</td></tr><tr><td>위기지역(안도걸의원안)</td><td>3</td><td>7</td><td>12</td></tr><tr><td>위기지역(김성원의원안)</td><td>2.5</td><td>6.75¹⁾</td><td>13</td></tr></table>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75 ¹⁾	10	10	위기지역(안도걸의원안)	3	7	12	위기지역(김성원의원안)	2.5	6.75 ¹⁾	13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75 ¹⁾	10	10																		
위기지역(안도걸의원안)	3	7	12																			
위기지역(김성원의원안)	2.5	6.75 ¹⁾	13																			

현행				개정안				
구분(%)	기본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10	10	<u>위기지역(안도결의원안)</u>	<u>6</u>	<u>10</u>	<u>18</u>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u>위기지역(김성원의원안)</u>	<u>5</u>	<u>8, 9²⁾</u>	<u>15</u>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단, 안도결의원안 발의 당시 중견기업 공제율은 점감구조가 아닌 단일구조: 5%(일반), 6%(신성장·원천기술)			
1) (~3년)7.5%, (4년~)5%					○ 시행일:			
2) (~3년)9%, (4년~)6%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안도결의원안)			
3) (~3년)20%, (4년~)15%					공포한 날(김성원의원안)			
4) (~3년)25%, (4년~)20%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안도결의원안, 김성원의원안)			

* 안도결의원안 2025. 1. 20. 발의(의안번호 7652), 김성원의원안 2025. 7. 4. 발의(의안번호 11269)

□ 개정안은 각종 조세특례의 요건이 되는 “위기지역”의 범위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¹⁾을 추가하는 한편, 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안도결의원안은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3%, 중견기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업 7%, 중소기업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안은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2.5%, 중견기업 6.5%~7.5%²⁾, 중소기업 13%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8%~9%³⁾,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의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됨.

고용위기지역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고⁴⁾, 고용재난지역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7.5%, 그 외의 경우 6.5%

3)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9%, 그 외의 경우 8%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 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임.⁵⁾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⁶⁾

□ 2025년 9월 현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고,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지정사례가 없음. 또한, 개정안에서 위기지역에 추가하고자 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경우 2022년 10월 31일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정된 바 있으나 2024년 10월 30일부로 해제되었고 2025년 5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가 신규지정되었음⁷⁾. 이후 2025년 8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추가 지정되었음.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2025년 5월 1일~2027년 4월 30일(2년)

[위기지역 등 지정 현황]

구분	위기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정지역	- * 기존 지정지역(경남 거제)은 '24. 6. 30.로 지정만료	-	- * 기존 지정지역(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은 '23. 5. 28 자로 지정만료	전남 여수 (’25. 5. 1. ~ '27. 4. 30.) 충남 서산 (’25. 8. 28. ~ '27. 8. 27.) 경북 포항 (’25. 8. 28. ~ '27. 8. 27.)
지정기간	2년 * 1년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	2년(최대5년) *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년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위기지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전라남도 여수시·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 8. 28. ~ 2026. 2. 27.)’이 포함된다고 해석됨. 다만, 기획재정부는 위기지역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필요시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러한 위기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감소액의 10%와 임금보전액⁸⁾의 15%를 합한 상당액을 세액에서 감면함⁹⁾.

8) 임금보전액: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수도권 밖 광역시 내 위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일반적인 수도권 밖 소재 광역시(7년)에 비해 오랜 기간(10년) 세액감면을 적용하며¹⁰⁾,

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최초 5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함¹¹⁾).

□ 개정안은 이러한 위기지역의 범위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위기지역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석유화학 산업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특정 지역을 우대하는 것은 제도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기지역 지원을 위하여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소득 발생 이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후 2년 동안은 50%의 세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적용 중일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¹²⁾ 역시 활용이 가능하므로 위기지역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정요건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수준의 위기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 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거나 지역의 주된 산업의 사업장 수가 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정이 가능함.

셋째, 개정안은 사업장이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상향된 통합투자세

1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 발생 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간 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함.

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기지역은 지정·선포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위기지역으로 지정·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만료 이후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율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안도결의원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할 때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9%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그 이후에는 위기지역 내 일반적인 중견기업으로서 오히려 상향된 1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어 점감구조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